

# 제 목 : '92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협약 사항 승인의 건

|          |     |
|----------|-----|
| 의안<br>번호 | 117 |
|----------|-----|

제출일자 : 92년 월 일

제출자 : 안산시장

## 1. 제출이유

주택전세금의 폭등으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돕기위해 안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의 체무보증에 대한협약사항을 안산시와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과 체결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함.

## 2. 주요골자

한국주택은행과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협약 체결

## 3 협약내용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안) 참조

# 零細民에 대한 專貢資金 支援 協約書

---

安 山 市

#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

안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안산시 거주 영세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용자 또는 용자에 관련된 보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사항을 협약 한다.

## 제 1 조 (계정설치 및 용자한도)

- ① 전세자금 용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②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을"이 용자할수있는 한도는 4,7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991년도에 "갑"과 "을"간에 체결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와 용자한도액중 미지원액은 계속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제 2 조 (용자대상자 선정등) 용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 제 3 조 (용자한도 및 이율) 용자한도는 세대당 300만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5%로 한다.

## 제 4 조 (상환 기간) 용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용자당시 주택을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91년 용자금 포함)

## 제 5 조 (용자 등) ① "갑"은 제 2조 규정에 의거 선정된 용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행정구역내에서 있는 "을"의 점포(출장소 제외)에서 용자받도록 특 조치 한다.

② "을"은 용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③ "갑"이 선정한 용자 대상자에게 용자취급하는 기간은 '92.12.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조 (용자금 반환의 특약 등) ① "을"은 용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계약서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용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 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 부터 용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의하여 납부한 용자금의 범위는 "을"의 용자원금에 용자금 납부 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 7 조(사후관리) ① "갑", "을"은 용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용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②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용자금 및 이자 납입상황과 주거 실태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하 "채무관계자"라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용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손실보존) ① "갑"은 제1조 제2항의 용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용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이하 "대급금"이라 한다) 및 그부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을"이 채무관계자에게 용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 또는 대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월에 "갑"의 관할동직원과 "을"의 용자 취급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3. 제 2호의 유보기간(1개월)내 용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 2항 제 1호의 보존할 금액은 제 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용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대급금 및 그 부대채권을 포함한다.

④ "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 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은 날로 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91년도 협약에 의한 용자금 포함)

⑤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 제 9조(기 타) ①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② 기타 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와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 협약 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2. 7.

(갑) 안 산 시 장 (인)

(을) 한국주택은행(겸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관리기관) (인)